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 출 일 : 2026. 8. 3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및 지방자치의 이념을 시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구현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시민이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헌법친화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 구현과 민주적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헌법친화도시 실현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5조)
-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6조~제7조)
- 헌법친화도시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안 제8조~제9조)
- 헌법교육 등 헌법친화 사업 규정(안 제10조~제13조)
-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 7. 9. ~ 2026. 7. 29.(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조례안: 별첨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정신이 시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헌법친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친화도시”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市政)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헌법교육”이란 헌법의 의미, 기본권, 민주주의 원리 등 헌법적 가치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헌법친화 사업”이란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해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홍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2. 모든 시민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것
3. 성별·연령·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헌법친화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4.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확산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헌법적 가치가 남양주시 행정 전반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자의 책무) 남양주시 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남양주시가 헌법친화도시가 되도록 4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친화도시의 목표와 방향
2. 헌법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법친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헌법친화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헌법친화도시 위원회) ① 헌법친화도시 실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헌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계 전문가
2. 헌법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시민사회 대표
3.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헌법친화 사업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헌법친화 사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헌법친화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헌법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이 헌법의 의미와 기본권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헌법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원리(시민주권·민주주의·기본권 보장 등)
2. 헌법 기관의 역할과 기능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4. 헌법 역사와 헌법재판 사례

③ 시장은 헌법교육을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계층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헌법교육 지원) 시장은 학교·도서관·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 공공 시설에서 헌법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사 파견, 교육 자료 제공, 시설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헌법친화 사업) 시장은 헌법적 가치의 확산 및 헌법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헌법적 가치 관련 전시회·포럼·강연회 등 행사 개최
2. 헌법적 가치 홍보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3. SNS·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헌법적 가치 홍보

제13조(민주시민 실천 프로그램) 시장은 시민이 헌법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 참여 민주주의 프로그램, 숙의(熟議)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시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시민 청원 및 제안 접수·처리 기능
2. 정책 의제에 대한 온라인 공론화 및 숙의 토론 기능
3. 온라인 설문·투표 등 전자적 의사결정 참여 기능
4. 헌법교육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능
5. 그 밖에 시민 간 소통·교류 활성화 기능

제15조(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시장은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헌법친화도시 실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 · 과		자치협력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팀장 직위·성명	주민자치팀장 김경은
	담당자 성명·전화	김민철 (031-590-446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안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헌법친화도시 위원회 운영비(위원 수당 등)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민 헌법교육 실시 및 헌법친화 사업 추진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정책적 방향성과 시의 책무를 정립하는 선언적·권고적 조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확정되는바, 현시점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계하기에 한계가 있음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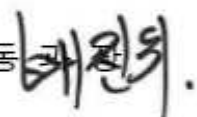
남 양 주 시

수신 자치협력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경기남양031)

1. 자치협력과-5299(2026. 7. 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남양031) 1부. 끝.

여 성 아 동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2026. 7. 6. 배민휘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0493	(2026. 7. 6.)	접수	자치협력과-6313	(2026. 7. 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여성아동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3965	팩스번호	031-690-2269	/ yhllee0127@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31			
정책명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자치협력과		
	담당자명	김민철	전화번호	031-590-446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7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협력과)	○ 시민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및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위한 시민주권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 헌법친화도시 실현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5조) ○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6조~제7조) ○ 헌법친화도시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안 제8조~제9조) ○ 헌법교육 등 헌법친화 사업 규정(안 제10조~제13조) ○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7월 06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자치협력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자치협력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29)

자치협력과-5298(2026. 7. 6.)호와 관련하여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문/판

주무관 송호림 청법윤리팀장 이철주 감사관 2026. 7. 6.
문경석

협조자

시행 감사관-7608 (2026. 7. 6.) 접수 자치협력과-6306 (2026. 7. 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4719 팩스번호 031-690-2079 / rims@korea.kr / ☎공개(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29		
자 치 법 규 명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자치협력과	입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민철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7. 6.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6년 7월 6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 자치협력과장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자치협력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1. 자치협력과-5298(2026. 7. 6.)호와 관련됩니다.
 2.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제정안은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 책무 및 추진 체계의 정립과 헌법교육 등 헌법친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끝.

의 회 법 무 과장

주무관	조한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2026. 7. 6.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7948	(2026. 7. 6.)	접수	자치협력과-6317	(2026. 7. 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법무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7920	팩스번호	031-690-2900	/ hpj1235@korea.kr	/ * (공개) (5)	

붙임5 입법예고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1. 자치협력과-5375(2026. 7. 8.)호와 관련입니다.
2.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7. 9.(목) ~ 2026. 7. 29.(수) /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예고결과: 의견없음

마. 향후계획: 제518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김민철	주민자치팀장	김경은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행정국장	전일 2026. 7. 30. 박진범
협조자	주무관	권혁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자치협력과-6086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65	팩스번호	031-590-2036	/	useful5131@korea.kr	/	대국민 공개